

【 7 】 양주군도시계획조례증개정조례안

제출연월일 : 2001. 4. 10.

제 출 자 : 양 주 군 수

1. 개정이유

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심지내의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등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기 위해 「특정용도제한지구」를 지정·운영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중 군 의회 의원 수를 조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「특정용도제한지구」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동지구내에서는 위락, 숙박시설등 주거 및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3조의2).
- 나. 도시계획위원회 당연직 위원중 군 의회의원을 종전에는 4인 이상으로 하던 것을 2인이상 4인 이하로 조정함(안 제35조제3항).

양주군조례 제 호

양주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

양주군도시계획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4.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

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제13조의2(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) ①영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3조제4호의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숙박시설 및 제12호 규정에 의한 위락시설을 건축할 수 없다.
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숙박·위락시설 이외에도 주거 및 교육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은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할 수 있다.

제35조제3항중 “4이상”을 “2인이상 4인이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) 법 제42조제1항제10호 및 영 제40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의 1의 지구로 한다. 1.~3.(생략) <u>〈신 설〉</u>	제13조(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) -- ----- ----- ----- ----- 1.~3.(현행과 같음) <u>4.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</u>
<u>〈신 설〉</u>	제13조의2(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 제한) ①영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3조제4호의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 숙박시설 및 제12호 규정에 의한 위락시설을 건축할 수 없다.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숙박·위락시설 이외에도 주거 및 교육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은 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할 수 있다.
제35조(구성) ①~②(생략) ③위원회 당연직위원은 위원장, 부위원장 및 도시·건축관련담당업무과장과 군의회 의원 4인 이상으로 한다.	제35조(구성) ①~②(현행과 같음) ③----- ----- ----- 2인 이상 4인 이하 -----